

의안번호	제 740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360 회)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7년 11월 21일

#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4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17. 11. 21.

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지도·감독 등) 제2항의 개정으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에 개인과의 교습자가 추가됨에 따라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의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교습시간 제한(안 제4조제1항)
  - 학교교과교습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의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:00부터 22:00까지,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:00부터 23:00까지,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:00부터 24:00까지로 한다. 다만,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:00부터 04: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.
- ※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에 “개인과의교습자” 추가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합의되었음

1)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 결과

기 간	내 용
2016. 12.19.~ 12.30.	「학원, 교습소 등의 교습시간 제한」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학생·학부모·교직원·학교운영위원 및 학원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가 선행 되었으므로 교습시간 제한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.
2017. 08.16.~ 08.17.	(사)한국학원총연합회충북지회 및 학원업무담당공무원과 주요 개정내용 검토 등 의견수렴 -교습시간 일부 제한(초등학생 심야교습시간 1시간 단축): 찬성 -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에 “개인과외교습자” 추가: 찬성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2) 입법예고

가) 입법예고기간: 2017. 9. 15. ~ 2017. 10. 10.(26일간)

나) 의견 제출자: (사)한국학원총연합회충청북도지회장

다) 의견 제출일: 2017. 9. 26.

라) 의견 내용

- 「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 
조례안: “찬성”

\* 지역별 분회장, 계열별 분과협의회장을 주축으로 학원장 의견수렴 및 합의

3) 규제심사: 해당 없음(2017. 10. 31. 충청북도교육청교육규제완화위원회)

4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5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:00부터 22:00까지,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:00부터 23:00까지,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:00부터 24:00까지로 한다. 다만,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:00부터 04: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시간)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:00부터 23:00까지로 한다. 다만,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24:00까지로 하며,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:00부터 04: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조(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시간)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의 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:00부터 22:00까지,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:00부터 23:00까지,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:00부터 24:00까지로 한다. 다만,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:00부터 04: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련 법령

### □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7.3.21.] [법률 제14403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

제16조(지도·감독 등)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의 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, 교습소 또는 개인과의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6.5.29.>

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·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·설비, 교습비등, 교습에 관한 사항과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,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·설비, 장부,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시설·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25., 2015.2.3.>

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의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25.>

⑤ 제3항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⑥ 교육감은 미등록·미신고 교습, 교습비등 초과 징수,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1.7.25.>

[전문개정 2007.12.21.]

□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4.7.1.] [충청북도조례 제3666호, 2014.6.27., 일부개정]

제4조(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)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:00부터 23:00까지로 한다. 다만,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24:00까지로 하며,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:00부터 04: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.  
<개정 2007.9.28>

② 제1항의 독서실 이용금지 시간 중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동행이나 요청에 따라 퇴실을 허용할 수 있다.<신설 2012.3.30.>

<참고>

## 시도별 교습시간 제한 조례 현황

학교급별			시·도명	시·도 수
초	중	고		
22시			서울, 대구, 광주, 경기	4
21시	22시	22시	세종	1
21시	22시	23시	인천, 전북	2
21시	23시	24시	충남, 경북, 경남, 제주	4
22시	23시	24시	대전, 강원	2
22시	22시	23시	부산	1
22시	22시	23시50분	전남	1
23시	23시	24시	충북	1
24시			울산	1
합 계				17